「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O 제명 띄워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이용섭)

- O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
- O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"를 "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 장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제38조"를 "제59조"로 한다.

제2조 중 "송정리 2390-10번지"를 "송정길 12"로 한다.

제5조 중 "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"를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"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"얻어야 하며, 준공과 동시 평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"를 "얻어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